

# 신도림고리 생활문화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965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9년 8월 7일  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- 가.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간인 「신도림고리 생활문화지원센터」의 민간위탁기간(3년)이 2019.12.31.자로 만료될 예정으로
- 나. 본 사업은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 의회동의 규정 신설('12.3월)이전에 위탁사업을 개시('11.8월)했으며, '19년 3월 개정된 동 조례에 근거하여 재위탁을 추진함에 있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위탁사무명 : 신도림고리 생활문화지원센터 운영
- 나. 시설개요
- 시설명 : 신도림고리 생활문화지원센터
  - 소재지 :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3-33번지
  - 시설규모 : 752.9㎡ (다목적홀, 음악·무용연습실 등)
  - 개관일자 : 2012.6.1.
- 다. 위탁기간 : 2020.1.1.~2022.12.31.(3년)
- 라. 민간위탁금(안) : 302백만원('20년 기준)

#### 마. 위탁사무

- 시설물 및 재산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
- 생활문화 거점 지원센터 조성 운영
- 시 아마추어 예술가 창작활동 지원
- 시민 문화향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

#### 바.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

#### 사.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본 사업은 문화시설의 관리·운영 및 아마추어 예술가 창작활동 지원, 기타 시민 문화향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사무를 포함하고 있음
- 위 사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문화콘텐츠에 대한 전문 지식 및 인적·물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민간 전문기관에 재위탁하여 본 사업을 운영하고자 함
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

-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(생활문화시설 확충 및 지원)
- 서울특별시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(센터 설치·운영 등)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
#### 나. 예산조치 : '20년 예산 편성필요

#### 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문화정책과 시민문화팀 박진영 (☎ 2133-2542)

**지역문화진흥법**

**제8조(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)**

-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·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립·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.
- ⑤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**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**

**제8조(센터 설치·운영 등)**

- ①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생활문화지원 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 - 1. 문화향유 및 체험활동, 전시, 공연 등을 위한 문화 공간 조성 및 운영
  - 2. 생활문화단체 및 동아리 등의 자율적인 활동 환경 조성을 위한 연합회 구성 및 운영 지원
  - 3. 생활문화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강사 및 소품·장비 등의 지원
  - 4. 지역사회 문화예술 발전에 공헌하는 사업
  - 5.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**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**

**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**

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3. 문화·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